

(산업통상자원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시행 '22.7.1., 대통령령 제32302호) 개정으로 고용보험요율이 인상됨에 따라, 전기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명시되는 고용보험의 요율을 인상하고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용보험 요율 상향 (안 제1호 가목)

전기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명시하는 고용보험의 보험료 요율 상향

○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4호)

3. 의견제출

‘(산업통상자원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3896, 팩스 : 044-203-4758
- 이메일 : yjs30319@korea.kr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가목 중 보험료 요율을 아래와 같이 한다.

공사금액 (추정금액)	1200억원 이상	950억원이상 1200억원미만	550억원이상 950억원미만	400억원이상 550억원미만	220억원이상 400억원미만	130억원이상 220억원미만	130억원 미만
요율	1.57	1.30	1.13	1.06	1.03	1.02	1.01

제1호라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으로 한다.

제3호 중 "제2017-116호, 2017.8.11"을 "제2020-40호, 2020.3.31"으로 한다.

제4호 중 "2020년 7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하며, "6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공사금액 (추정금액)	1100억원 이상	850억원이상 11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850억원미만	360억원이상 500억원미만	200억원이상 360억원미만	12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120억원 미만
요율	1.39	1.17	0.97	0.92	0.89	0.88	0.87

나. ~ 다. (생략)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 (보험료 요율)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한 요율의 100분의 50

마. (생략)

2. (생략)

3. 적용시기

○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6호, 2017.8.11)는 폐지한다.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공사금액 (추정금액)	1200억원 이상	950억원이상 1200억원미만	550억원이상 950억원미만	400억원이상 550억원미만	220억원이상 400억원미만	130억원이상 220억원미만	130억원 미만
요율	1.57	1.30	1.13	1.06	1.03	1.02	1.01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 (보험료 요율) -----제73조-----

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적용시기

제2020-40호, 2020.3.31 -----.

현행	개정안
4. 재검토기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u>2020년 7월 1일</u>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u>6월 31일</u>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재검토기한 ----- ----- <u>2023년 7월 1일</u> ----- <u>6월 30일</u> ----- ----- -----.